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구립 보미, 구립 숲속나라, 구립 가온, 구립 강변,
구립 뜰아래, 구립 샛별, 구립 엔젤아이, 구립 진로, 구립 청솔, 구립 푸른솔,
구립 피노키오, 구립 한빛, 구립 해뜰, 신원 어린이집]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7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6월 1일

나. 제안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3. 6. 27.)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 제안이유

신규 설치 및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를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시설개요

연번	어린이집명	행정동	소재지	면적 (㎡)	정원 (명)	위탁체	예 산 (2024년 기준)
1	(가칭) 구립 강서 신혼희망타운	화곡6동	공항대로46길 105	743	55	-	307,708천원
2	구립 보미	화곡6동	화곡로44나길 25	663	69	-	404,644천원
3	구립 숲속나라	화곡본동	까치산로4길 64-6	189	40	-	298,703천원
4	구립 가온 어린이집	등촌1동	양천로 590, 102동 102호	88	20	(개인) 최수진	247,112천원
5	구립 강변 어린이집	가양2동	허준로 139	279	57	(개인) 허영숙	302,901천원
6	구립 뜰아래 어린이집	염창동	양천로67가길 49, 201동 105호	83	19	(개인) 주인숙	285,912천원
7	구립 셋별 어린이집	화곡8동	초록마을로 166, 101호	187	19	(개인) 임샘	248,642천원
8	구립 엔젤아이 어린이집	가양3동	양천로 507, 106동 104호	135	16	(개인) 이은숙	192,898천원
9	구립 진로 어린이집	등촌3동	공항대로 351-21, 102동 102호	105	19	(개인) 이미숙	248,642천원
10	구립 청솔 어린이집	발산1동	강서로47마길 71, 107호	109	19	(개인) 최두은	192,988천원
11	구립 푸른솔 어린이집	화곡3동	화곡로13길 107, 104동 104호	133	19	(개인) 지미선	260,350천원
12	구립 피노키오 어린이집	화곡8동	강서로12길 73	311	48	(개인) 박수진	262,282천원
13	구립 한빛 어린이집	화곡2동	강서로8길 132	676	132	학교법인 백영학원	635,239천원
14	구립 해뜰 어린이집	등촌3동	강서로68길 36	151	35	(개인) 안미라	353,731천원
15	신원어린이집	염창동	양천로77길 45	878	110	(개인) 서신원	421,849천원

※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안전의 [붙임. 비용추계서] 참고

- 위탁사무내용
 -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영유아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 부모교육 및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
- 위탁기간: 5년
 - (가칭)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2024.01.01 ~ 2028.12.31.
 - 구립 보미, 구립 숲속나라, 구립 가온, 구립 강변, 구립 뜰아래, 구립 샛별, 구립 엔젤아이, 구립 진로, 구립 청솔, 구립 푸른솔, 구립 피노키오, 구립 한빛, 구립 해뜰, 신원 어린이집: 2024.03.01 ~ 2029.02.28.
- 수탁자 선정방식: 심의자료 접수 후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소요예산: 4,663,601천원(2024년 기준)

나. 추진일정

- 2023년 5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계획 수립
- 2023년 5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신규위탁 3건: (가칭)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구립 보미, 구립 숲속나라)
- 2023년 6월: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3년 9월~11월: 보육정책위원회 개최(3차례) 및 협약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10조, 부칙 제3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12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가칭) 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등 3개소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가 예정됨에 따라, 재위탁 및 신규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되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위탁업무에 해당되고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 주관부서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재위탁 및 신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신규 위탁은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실시(2023. 5. 12.)하여 ‘적정’으로 심의 완료한 것으로
 - (가칭)구립 강서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이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규정¹⁾에 따라 개원을 준비하고 있고,
 - 구립 보미 어린이집과 구립 숲속나라 어린이집은 민간 보육시설을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시설임
- 민간위탁 대상 시설 중 기존 12개소²⁾는 향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3차례 예정) 실시하여 재위탁을 진행할 예정임
- 검토결과, 어린이집 운영은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경험이 필요한 만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40.1%로 타 시·도 평균의 2.2배 수준[2023년 3월 기준]이고, 우리 구 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³⁾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2) 구립 가온, 구립 강변, 구립 뜰아래, 구립 샛별, 구립 엔젤아이, 구립 진로, 구립 청솔, 구립 푸른솔, 구립 피노키오, 구립 한빛, 구립 해뜰, 신원 어린이집

3) 2023년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목표 개소수 및 이용률: 7개, 43%

- 단순히 양적 증대가 아닌 보육 서비스의 질적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탁자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 시 어린이집 운영 실적,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 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③ 시설의 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위탁기간) 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② 시설의 재위탁은 한 차례만 한다. 다만,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지원한 단체, 개인의 경우 최초 위탁하고 협약 기간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 ③ 시설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아동·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부칙 제3조(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